

● 세계 각국의 도서관법

대영도서관법 · 공공도서관법

대영도서관법

[1972년 법률 제22호]

- 제1조 ① 본법은 영연합왕국을 위해서 「대영도서관(British Library)」이라고 불리우는 도서, 사본, 정기간행물, 필름 및 인쇄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기록물을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국립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대영도서관은 「대영도서관이사회(British Library Board)」라고 불리우는 공적인 기관에 의해서 관리·운영되는 것으로 한다. 이사회는 이 도서관을 이공학과 인문의 양분야에 관한 레퍼런스, 학습 및 서지적 기타의 인포메이션·써어비스를 위한 전국적 센터로 해서 운영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 ③ 이사회는 대영도서관의 써어비스를 특히 교육·연구재기관, 다른 도서관 및 산업에 이용하기 쉽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 1) 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한 다른 도서관 및 인포메이션·써어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에 널리 기여하기 위해서 적절하다고 이사회가 생각하는 경우,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원조하는 것은 이사회의 직능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 2) 이사회는 1964년의 공공도서관·박물관법(Public Libraries and Museum Act 1964)에서 규정한 도서관행정집행당국 또는 일반공중의 회원 혹은 기타의 사람에 대해서 도서관 시설를 제공하고 있는 법인의 비용을 분담시킬 수가 있다.
- ④ 이사회는 그 수집자료를 경영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위와 조건에 따라서 자료의 대출을 행하고, 또는 수집자료 혹은 전물의 일부를 교육적, 문학적 혹은 문화적 성질의 행사에 관련해서 이용시킬 수가 있다.
- 단, 이와같은 자료를 대출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결정 및 대출기간, 대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는 이사회는 이 국립도서관에 내관하는 학생 기타 사람의 이익, 당해 자료의 물적조건과 희소성의 정도 및 그것이 받으리라고 생각되는 위험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사회

제2조 ① 대영도서관의 이사회는 국무대신에 의해서 임명되는 이사장(Chairman)과 8인 이상 13인을 넘지 않는 수의 이사(member)로서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이사 가운데 1명은 여왕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국무대신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1) 적어도 이사 가운데 1명(이사장을 포함)은 상근이사로서 임명되지 않으면 안된다.

2) 상기 1)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이사(이사장 및 여왕에 의해서 임명되는 이사를 포함함)는 비상근이사로서 임명할 수가 있다.

3) 비상근이사 가운데 1명은 대영박물관의 관리위원회(Trustees)에서 지명한 자를 충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국무대신은 이사회의 이사를 임명하기 위한 선고에 있어서는 도서관 또는 대학의 업무 혹은 재정, 산업, 행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 이사회는 국무대신이 이사회와 협의한 뒤에 행하는 지시에 따라서 조언심의회(Advisory Council)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해 심의회는 국무대신 또는 이사회가 필요에 응해서 적의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 또는 대영도서관의 부국에 대해서 조언을 행할 직책을 갖는다.

④ 본법의 부칙(Schedule)의 제규정은 이사회와 그 이사, 이사회 의의사수속과 부수적 업무직원의 고용과 고용기간·조건 및 본조에서 설치를 규정한 조언심의회에 관해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대영박물관도서관의 이동

제3조 ① 본조에 의한 지정일 직전까지는 대영박물관 관리위원회의 재산이며, 또한

1) 대영박물관의 도서국 (Department of Printed Books), 사본국(Department of Manuscripts) 및 동양관계도서·사본국(Department of Oriental Printed Books and Manuscripts)의 장서의 주요부분으로 되어있으며

2) 수집, 보관, 관리목적으로 위해서 또 제부국의 관리상의 목적을 위해서 제부국에서 통상사용되었다.

모든 자료는 이날로써 대영박물관의 관리위원회의 재산이 아닌 대영도서관이 사회의 재산이 되는 것으로 한다.

② 본법에 있어서의 「지정일(the appointed day)」이란, 국무대신이 판정법적 명령(Statutory instrument)에 의거해서 발하는 명령에 의해서 정해지는 일자를 말한다.

③ 본조 ①항은, 관리위원회와 이사회와의 사이에서 본조 소정의 대영도서관의 재산으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서에 의한 합의가 성립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④ 본조 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특정한 자료가 대영도서관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제시한 때에는 거기에 소관된 장서를 이사회 소관으로 옮길

수가 있다. 본조에서 규정된 관리위원회의 자료를 이동하는 권능은 그 자료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신탁 또는 조건(문서로 되어있거나 그렇지 않거나를 불문한다)에 관계없이, 또 1963년의 대영박물관법(the British Museum Act 196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⑤ 본조에 의해서 이사회로 이관된 재산은 이전에 어떠한 신탁 또는 조건에 의해서 당해 재산이 관리위원회로 귀속된 것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소관 하에서도 똑같은 신탁 또는 조건에 복종하는 것으로 한다.
- ⑥ 관리위원회는 부지간의 부소를 이사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와의 사이에서 합의가 성립된 조건으로(급여에 관한 조건을 포함한다) 대영박물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써어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조치를 강구할 수가 있다.

이사회에 대한 추가규정

제4조 ① 지정일로부터 1911년의 저작권법(Copyright Act 1911)의 제15조(영연합왕국 내에서 간행된 모든 도서의 발행자에게 그 카피의 1부를 대영박물관에 납부할 것을 의무지운 조문)는 그 ①, ③, ⑥항에 있어서 대영박물관 관리위원회의 자구를 대영도서관이사회로 바꾸어 읽은 뒤에 계속해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 1) 동일한 개정이, 1932년의 대영박물관법(British Museum Act 1932)의 제1조 ①항(출판물 가운데 특정한 범주의 것을 1911년 법 제15조의 요구에서 관리위원회의 문서에 의한 요청에 의해서 제외하는 조문)에 있어서는 관리위원의 자구에 대해서도 똑같은 바꾸어 읽기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 2) 동법 제1조 ①항에서 규정된 규칙을 작성할 권능은 관리위원회에 의해서 행사되는 대신에 이사회에 의해서 행사되는 것으로 한다.
- 3) 지정일 직전까지 효력을 갖고있던 동조의 관리위원회에 대한 규칙은 그 규칙에서는 관리위원회라고 되어있는 것을 이사회로 바꾸어 읽은 위에 계속해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 ② 본이사회는 1963년의 자선단체법(Charities Act 1963)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면세단체로 한다. 그러므로 동법부칙②(동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규정의 적용에 명제되는 기관을 게재하고 있는 부칙)의 끝에 「대영도서관이사회」를 부가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이사회는 매년 국무대신이 결정한 날까지 그 이전 12개월간에 있어서의 이사회의 의사와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국무대신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무대신은 그 보고서의 사본을 의회의 양원에 양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재정과 회계

제5조 ① 국무대신은 대영도서관의 이사회에 대해서 대영도서관의 운영(이사회의 자료 수집을 위해서 신자료를 입수하는것을 포함한다). 그 일반적관리 또는 기타의 면에서 이사회가 필요로하는 경비에 대해서 대장성이 승인한 액을, 사회가 제공하는 재원 중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사회에 지불된 자금의 사용과 지출에 관해서는 이사회는 국무대신이 필요에 응해서 적의하게 내리는 방침에 의거해서 운영하나

가는 것으로 한다.

- ② 각회계년도에 이사회가 받은 자금은, 재산의 처리를 위해서이던 써어비스의 제공을 위해서이던 또한 그 이외의 일을 위해서이던 간에 국무대신이 대장성의 승인하에 제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한다. 이와같은 지시는 그 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는 정리공체기금(Consolidated Fund)으로 불입할 것을 의무지울 수가 있다.
- ③ 이사회는 적당한 회계부와 기타의 기록부를 보관하고, 국무대신이 대장성의 승인하에 지시하는 양식으로 각회계년도마다의 회계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보고서는 당해 회계년도의 종료후에 오는 11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국무대신에게 제출되는 것으로 하고, 국무대신은 이것을 회계검사원장관(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에게 송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회계검사원장관은 그것을 검사, 인증하고, 그의 보고서를 첨부해서 그 사본을 의회의 양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직원의 고용기간·조건에 관한 협의

제6조 ① 이사회에 의해서 고용되는 자의 고용기간과 조건에 대해서는 교섭에 의한 해결이 구조의 설립유지에 관해서 당사자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과 같은 합의에 대해서, 합의에 의한 결정이 행하여져야 할 경우에 있어서 해결이 되어지지 않을때에는 조정자에게 부탁한다고 하는 조건으로 이사회와 이사회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조직과의 사이에서 결론을 얻기 위해 그와 같은 조직을 협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대영도서관의 이사회의 직무로 한다.

② 이사회에 의해서 고용되는 자의 안전, 보건 및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건의 개선과 정비에 대해서, 또 기타 이사회의 써어비스를 효율적으로 진행시켜나가는 등의 이사회와 고용되는 자와의 쌍방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토의 하기위한 기구의 설립·유지에 관해, 당사자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합의에 대해서 이사회와 이사회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조직과의 사이에서 결론을 얻기 위해 조직과 협의하는데 노력하는 것은 대영도서관의 이사회의 직무로 한다.

인용

제7조 본법은 「1972년 대영도서관법」으로서 인용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대영도서관의 이사회와 심의회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

제1조 이사회는 영구계승권과 공인을 갖는 법인단체로 한다.

제2조 이사회의 이사는 본부최 이하의 규정에 의해서 그 임기에 응해서 그 직에 취임 및 그 직에서 사임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어떠한 이사의 임기도 3년에서 7년까지의 사이로 한다.

제3조 이사회의 이사는 문서에 의한 계출을 국무대신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직을 사임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하고, 이사장은 이와같은 계출에 의해서 이사의 직을 사임함이 없이 이사장직을 사임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이사의 임기는 종료한 자, 또는 이사장의 임기는 종료한 자는 재임될 수가 있다.

이사의 급여, 수당 및 연금

제5조 ① 이사회는

1) 이사에 대해서 국무대신이 결정하는 급여 및 수당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2) 국무대신이 특히 정하는 사례에 해당하는 이사에 대해서는 이와같이 해서 결정되는 연금이던가 수당 또는 사례를 그 이사에게 지불하지 않된다. 또는 그러한 준비를 위한 지불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만약 이사가 그 직을 사임하고, 또한 만약 대신이 특별한 사유로서 당사자에게 위로금(compensation)을 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신은 이사회에 대해서 그의 결정하는 액의 위로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다.

② 본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무대신은 이사회에 이사임명후 될 수 있는대로 조속히 그 이사에게 지급한다. 또는 지급하게 되는 급여와 수당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의 양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대신이 본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행하는 결정이 만약 그것에 대한 보고기한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나 또한 본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행하는 결정이 만일 이사회의 이사에 대한 연금, 수당 또는 사례의 지불 또는 그러한 준비를 위한 지불에 관한것인 경우에 대신은 그것이 결정되는대로 즉시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국무대신의 결정 및 요구의 강제는 공무원담당대신(Minister for the Civil Services)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사회의 유급이사는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는 것)

제6조 영연합왕국의회의 하원에 적용되는 1957년의 하원의원자격결격자법(House of Commons Disqualification Act 1957) 부칙 1의 제3부(여기서는 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원의원이 될 수 없는 직무명이 기록되어 있다)에, 알파벳순으로 적당한 개소에 「급여를 받고 있는 대영도서관이사회의 이사」라는 자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한다.

의사수속

제7조 ① 이사회의 정족수는 5명으로 한다. 또 이사회의 회의에 대한 세율은 이사회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② 이사회는 그 회의에 수속에 대해서 규칙을 만들 권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이사회의 의사수속의 효력은 이사의 결원 또는 이사의 임원수속의 하자에 의해서 영향되지않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이사회의 인장의 사용은 사무국장 또는 이사회의 목적을 위해서 전반적 또는 특별히 활동하는 것을 이사회가 인정한 자의 서명에 의해서 인증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이사회의 도장을 찍고 정당하게 작성된 것 또는 이사회를 대표해서 서명된 것이 라고 불리우는 문서는 증거로서 받아드려져야 하며, 또한 만일 반증이 없으면, 그와같

이 작성된 것,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서명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한다.

이사회의 부수적 업무에 관한 권능

- 제11조 ① 이사회가 그 권능을 수행할 때에 부수관련해서 발생하는 일체의 업무를 수행
또한 처리해 나가는 것은 법이 정한 법인으로서의 이사회의 능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단 이사회는 금전을 차용하는 권능을 갖지 않는 것으로 한다.
- ② 이사회는 그 권능의 행사와 업무 처리의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적의하게 입안, 개정,
철회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제규칙에는 국무대신의 승인하에 이사회에 의해서 제공되
는 씨어비스 또는 그 수집자료의 대출 또는 이용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규정을
넣을 수가 있다.
- ③ 전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권능중에는 다음 항의 제규정에 따라서 자료
의 수집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재산을 취득하고 또는 처분하는 권리가 포함되는 것
으로 한다.
- ④ 본칙 제3조①항 1)에 의해서 이사회밀으로 이관되는 자료를 처리하는 이사회의 권
능은 이하의 경우에만 행사되는 것으로 한다.
- 1) 그것이 이사회의 수집자료중에 있는 자료와(그것이 이관될것이든 아니든 간에)
중복하는 경우,
 - 2) 당해 자료가 적어도 1850년 이후에 인쇄된 것이라고 이사회가 판단하고, 또한 사
진 또는 사진과 유사한 공정에 의해서 작성된 그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및
 - 3) 이사회의 의견으로 그 수집자료가운데에 두어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또한
학생의 이해를 손상시킴이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사회는 대영박물관(박물학관)의 관리위원회가 당해 자료는 동박물관의 수집자료와
함께 적절하게 보관된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료를 그 관리위원회로 옮길
수가 있다.
- ⑤ 이사회가 소관하는 재산이 (본칙 제3조 ①항 1)의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밀으로 옮
겨진것인지 어떤지를 불문하고), 신탁 또는 조건에 의한 것인 경우,
- 1) 이사회는 그것을 그 신탁 또는 조건에 맞지않는 방법으로 처분 또는 처리해서는
안된다. 또
 - 2) 이사회로부터 그것을 취득하는 자가 소관하는 경우일지라도 다같이 신탁 또는 조
건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⑥ 1963년의 대영박물관법(British Museum Act 1963)의 규정에 의해서 대영박물관(박
물학관)의 관리위원회와 이사회가 당해 재산을 대영도서관에서 보관하는 편이 보다
적절하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는 그것을 이사회 소관으로 옮길 수가 있
다.

직원의 고용

- 제12조 ① 이사회는 1명의 사무국장(secretary)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기타의 직원(officers)을 임명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고용한 이들 역원
및 기타의 자(other persons)에 대해서 국무대신이 공무원담당대신의 승인하에 결정하

는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이사회는 그 결정에 의해서 공무원담당대신(이사회의 이사로는 되지 않는)의 승인하에 고용한 직원 또는 기타의자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하는 연금이나 수당 또는 사례금을 지불하던가, 또는 그러한 준비를 위한 지불을 행하던가, 또는 그 지불을 위한 계획(기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획)을 준비하고, 실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 ③ 전항의 계획대상으로 되는 자가 이사회의 이사로 되는 경우에는 이 계획의 주지요보아 그자의 이사회의 이사로서의 서비스는 이사로서가 아니고, 이사에 의해서 고용된 자의 서비스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 계획하에 있어서의 그자의 재권리는 본부칙 제5조 ①에 의해서 영향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① 지정된 일자의 직전까지 국가의 공직에 있던가 또는 대영박물관의 관리위원회에 의해서 고용되고 있던가 해서, 지정된 일자 및 그 이후에 이사회에 의해서 고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그자의 근무기간의 교섭에 있어서는 이사회는 전체로서의 근무기간이, 그와 같은 자의 경우, 이사회의 고용통지가 발해질 때에야 비로소 고용되는 자의 근무기간보다도 유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 ② 본항 이하의 규정에서 「1963년 법」이란 1963년의 고용계약법(Contracts of Employment Act 1963)을, 「1965년 법」이란 1965년의 잉원수당법(Redundancy Payments Act 1965)을, 「퇴직연금법」이란 1965년 및 1972년의 퇴직연금법(Superannuation Acts 1965 and 1972)을 말한다.
- ③ 지정된 일자의 직전까지 상기 ①에 기술되어있는 바와같이 고용되어있는 자가 이사회에 의해서 고용되는 경우,
 - 1) 1963년 법에 1965년 법의 목적에 따라서 그자가 그 이전에 고용되고 있던 기간(차항④에 의해서 제외되는 기간이외의 기간)은 이사회에 의한 고용기간으로서 계산되어야 할 것이며, 고용자의 변경은 고용기간의 계속을 분단하지 않는것으로 한다. 또
 - 2) 만일 그자가 대영박물관의 관리위원회에 의해서 고용되고 있었으나 그 지정된 날부터 이사회에 의해서 재고용된다고 하는 조건으로 고용계약이 끊어지고 있던 경우, 그자는 1965년 법의 목적에 따라서 인원과잉의 이유로 해고되었다고해서 취급될 것은 아니다.
- ④ 본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일자이전에 해고되고 있는 자의 경우, 그 해고까지의 고용기간은 제외되는 것으로 한다. 그 해당자에 대해서는 1965년 법의 제1장에 의하던가 또는 퇴직연금법 혹은 이러한 법률의 어느 부분에 대신할만한 법률의 제정에 의하던가, 또는 1965년 법의 제41조 ③항에 규정되고 있는것과 같은 조치의 어느 쪽엔가에 의해서 지불이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조언심의회

제14조 ① 본칙제2조 ③항에 의해서 조직되는 조언심의회는 1명의 회장(chairman) 및

국무대신이 동향에 계기하고 있는 방침에 의거해서 정하는 수의 기타의 회원들로서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조언심의회의 회장 및 기타의 회원에 대해서 국무대신이 공무원담당대신의 승인하에 결정하는 급여(사례의 형태로) 및 수당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공도서관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법

제1조 (국무대신의 도서관사업에 대한 감독)

본법 시행후에는 「잉글랜드」 및 「월즈」에 있어 관계 지방행정기관(Local Authorities)이 행하는 공공도서관사업을 감독하고 동사업을 개선촉진하며 관계 지방행정기관에 대해 본법에 의하여 또는 본법에 따라 부여된 도서관에 관한 업무를 도서관행정집행기관(Library authorities)으로 하여금 적정하게 수행하는 것은 국무대신(Secretary of State)의 의무이다.

- ② 각 도서관행정집행기관은 국무대신이 본 조항소정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서관 건물(Premises) 장서 및 기록에 대한 검사실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2조 (중앙자문심의회)

- ① 「몬마으스샤이아」(Monmouthshier)를 제외한 「잉글랜드」를 소관하는 것과의 2개체 도서관자문심의회(Library Advisory Councils)를 설치한다. 각 심의회의는 본법 소정의 또는 그 이외의 도서관시설이 설치 또는 이용에 관해 심의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사항 및 국무대신이 심의회에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동대신에 건의할 의무가 있다.
- ② 각 심의회의 위원은 국무대신이 임명한다. 국무대신은 각 심의회의 위원 1명을 각 심의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또한 교육과학자(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의 공무원 1명을 심의회의 서기로 임명하여야 한다.
- ③ 각 심의회에는 도서관 집행기관이 행하는 도서관 행정에 관한 경험을 가진자 및 도서관 집행기관 이외의 단체가 관리하는 도서관 운영에 대해 경험을 가진 자가 위원으로서 가입하여야 한다.
- ④ 각 심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각각의 임기에 따라 그 직에 취임하며 또는 그 직을 퇴임할 수 있다. 또한 임기만료 후라도 재임될 수 있다. 단 각 위원은 국무대신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하시라도 사임할 수 있다.
- ⑤ 각 심의회는 스스로 그 의사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단 심의회의 의사정족수는 국무대신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서관 상호간의 협조를 위한 지역위원회)

- ① 국무대신은 본법 시행후 가능한 한 조속히 명령에 따라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전역에 공하여 도서관지역(Library Region)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국무대신은 지역내의 도서관행정 집행기관과 협의한 후에 각 도서관지역마다,

가) 각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을 대표하는 자 및 계획으로 정한 자로 구성하여 도서관 행정 집행기관 상호간 및 동기관과 도서관에 관계있는 업무를 가진 지역내 또는 지역외의 단체와의 협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실시를 감독할 의무를 갖는 지역구 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조직 및 업무

나) 위원회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Contribution)에 있어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에 의한 지불에 관한 요구를 포함하여 도서관위원회가 행하는 요구에 대한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의 그의 이행 기타 지역내 및 지역외에 있어서의 도서관 상호간의 협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대신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이를 정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역도서관 위원회의 위원이 적어도 대다수는 당해지역내의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의 구성원이라야 한다. 도서관위원회에 위원을 파유하지 않고 있는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은 위원회에서 동위원회가 설립을 정한 계획에 따라 지정한 자에 의해 대표되어야 한다.

④ 본 법조문에 의해 부여한 명령 및 계획작성 권한은 의회의 상하원중 어느 의원의 의결이 있으면 폐지할 수 있는 제정법적 명령(statutory instrument)에 의거 행사되어야 한다. 본 조문에 의해 작성된 명령 또는 계획은 그후 명령 또는 계획에 의해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 단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기 전에 국무대신은 관계도서관위원 및 관계도서관행정 집행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무대신은 공공도서관사업의 능률을 증진하고 또는 그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본 조항에 따라 설치될 도서관위원회에 대하여 타의 도서관위원회 또는 도서관에 관계가 있는 업무를 대행하는 타단체와 협정을 맺고 그 협정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도서관행정 집행기관 및 그의 관할구역)

① 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관계지방 행정기관은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으로 된다. 즉

가) 도(County)또는 특별시(County Borough)의 참사회(Council)

나) 런던·바로의 참사회 및 런던 시의 합동참사회(Common Council)

다) 시(Non-county borough) 또는 면(Urban district)의 참사회 단 ① 본법 시행 직전에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이었거나 또는 ② 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국무대신이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으로서 인정한 바에 한한다.

본법 시행 직전에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이었던 기타의 관계지방 행정기관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으로 존속하지 않는다.

② 전항의 기관인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으로서의 직무 권한은 당해기관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구역(본법에서는 도서관구역(library area)라고 칭한다) 또는 가) 도참사회의 경우 그 행정구역에서 타의 도서관행정기관의 도서관구역을 제외한 구역 나) 제5조에 의해 설치된 합동위원회(joint board)의 경우 합동위원회를 구성할 기관이 도서관행정기관일 때 이들 기관의 도서관구역으로 되는 구역에 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당해기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기관은 그 도서관구역 이외에서도 그 지

무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다.

제5조 (합동위원회)

- ① 국무대신은 2개 기관 또는 2개 기관 이상의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명령에 의해 이들의 기관으로 구성하여 그 업무 개시일부터 이들 기관을 대신하여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으로 되는 합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규정을 설치할 수가 있다. 1932년의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Act) 제293조 제1항의 규정(동법의 합동위원회에 관해 적용을 정한 규정)의 규정운용에 구애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명령으로써 합동위원회의 조직 절차(정원수 포함) 및 비용지출을 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② 본 조항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원회는 그 업무의 실시를 시작한 날부터
 - 가) 합동위원회를 구성한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의 도서관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합동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된다.
 - 나) 당해 기관의 도서관의 자산 및 의무는 합동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한 명령에 별도조항으로 규정할 경우를 제외하고 본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적으로 합동위원회에 따른다.
- ③ 국무대신은 본 조항에 의거 설치된 합동위원회에 가입한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의 신청에 의해 명령으로써 합동위원회의 해산을 규정할 수 있다. 합동위원회가 해산할 경우 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던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은 재차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으로 된다. 단 이들 기관이 시 또는 면의 참사회일 경우 해당시 및 면의 인구 40,000인에 미달할 경우 명령으로써 당해 참사회는 독립한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으로 될 수 있게 규정한다.

④ (합동위원회 해산의 경우의 소속 직원의 신분 및 자산의 이전에 관한 규정) 생략

제6조 (시 및 면에 관한 특례)

- ① 가) 시 또는 면의 참사회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10년 후인 당년의 본법 시행일에 해당하는 날(본 조항에서는 이 날을 「재심의 날」(review date)이라고 칭한다). 또한 그후 매년의 재심일인 전일에 도서관행정기관이며 또한 나) 당해시 또는 면의 인구가 40,000인에 미달일 경우 국무대신은 당해시 또는 면의 참사회 및 도의 참사회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원회에 기회 가입되어 있을 경우 동위원회와 협의한 연후 또는 당해시 또는 면의 행정구역 및 인구상의 급후변화 및 기타실정을 고려한 연후에 당해시 또는 면에 관한 본법에 따라 도서관시설 개선에 소요될 것이 참작될 경우 명령에 의해 당해시 또는 면의 참사회가 명령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도서관집행 기관이 될 수 없는 규정을 설정한다.
- ② 전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정할 권한은 의회 양원중 일원의 결의가 있으면 폐기되는 제정법적 규칙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 ③ 재향일 직전에는 도서관행정기관이 아니었으나 그 관내에 40,000인을 초과하는 인구를 갖는 시 또는 면의 참사회에 관해서는 재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참사회를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으로 승인할 수 있다. 국무대신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참사회는 교부된 승인통지서에 지정한 날로부터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이 된다.

- ④ 국무대신은 전항의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도 참사회 또는 도 참사회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합동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시 또는 면의 참사회가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일 경우 당해 참사회는 하시라도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으로서의 권한폐기를 결의할 수가 있다. 이 결의에 대하여 국무대신이 확인 결재가 있을 때 당해 참사회는 결재로서 지정된 날에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의 기능을 상실한다.
- ⑥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도서관직원의 소속 및 도서관 재산의 이전에 관한 특례)
생략

제7조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의 일반적 의무)

- ① 각 도서관 집행기관은 전도서관 이용희망자에게 종합적 및 능률적인 도서관봉사를 행하여 그들을 위해 소요직원의 채용, 건물 도서 기타 자료의 입수 관리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 단 동기관은 도서 기타 자료대출의 편의를 모든 이용자에게 부여할 권한을 가지나 동기관의 도서관 구역내에 주소 또는 근무처가 없는 자 또는 동구역내에 종일제 교육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전술한 편의의 부여를 본조 규정에 의해 의무를 지지 않는다.
- ②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은 전항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때는 특히 다음 사항에 있어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가) 충분한 장서의 보지, 타도서관 행정집행기관과 협정 및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해 그의 · 수 · 법위 · 절에 있어 일반의 요구와 성인 및 아동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도서, 기타의 인쇄물, 회화, 축음기, 「레코드」, 「필름」 및 기타 자료의 대출 또는 문의에 대한 편의에 응하는 것.
- 나) 도서관 봉사의 충분한 이용을 성인 및 아동에 장려하여 그 이용에 관한 조언을 행하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문헌 기타의 정보를 이용에 공할 것.
- 다) 도서관행정 집행기관 및 도서관구역내의 타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간에 완전한 협조가 이루어 질 것.

제8조 (도서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제한)

- ① 본조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은 그 도서관 시설의 이용에 있어(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의 도서관 시설이 이용되었을 경우를 제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 ②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은 가) 도서 기타 자료의 대출을 예약한 자에 그 대출준비가 되었음을 통지하는 경우 나) 차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도서 기타 자료의 반환을 행하지 않았을 경우 국무대신은 특히 지정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수료 징수를 할 수 있다.
- ③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은 자료대출에 있어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전조4항의 규정에 따라 동기관이 대출의 편의를 부여받을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가) 도서 축차간행물 「팜프렛」 또는 유사자료 및 나) 이들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진

기타 수단에 의한 복제물의 대출을 행할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 ④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은 도서목록색인 기타 이와 유사한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자료의 제공을 받은 자의 소유물이 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⑤ 도서관 봉사의 일부로서 통상 행하여지는 범위를 초월한 편의를 부여할 경우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분담금 및 보조금)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은 공중의 일원에 도서관 이용편의를 부여할 타도서관행정 집행기관 또는 개인의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 ① 국무대신은 전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이 참조할 것을 허락한 도서목록 또는 색인을 보관하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의 제7조 제1항에 의해 의무이행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단체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의무불이행의 경우의 국무대신의 권한)

- ① 국무대신은 가)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이 본법에 따라 또는 본법하에서 과해진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였다는 진정서를 받거나 또는 나)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에 그러한 의무불이행의 소재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현장의 실정을 조사한 연후 당해기관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을 확인하면 명령으로 직무태만을 선언하고 또한 그 직무태만을 제거하기 위해 특히 방법 또는 시기를 지정하여 그 의무이행을 지시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명령을 받은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은 명령으로써 요구된 사항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국무대신은 직무집행명령 기타에 의해 이 이행을 통제하는 대신 1) 당해기관은 시 또는 면의 참사회일 때 명령으로 지정한 날로 당해 참사회가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을 폐지할 수 있게 규정하며 2) 당해기관이 합동위원회 일 때는 동위원회는 지정한 기일에 해산하고 (1) 그의 해산 후에 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던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에서 인구 40,000인 미만의 시 또는 면의 참사회 이외일 경우에는 다시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 (2) 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 40,000인 미만의 시 또는 면의 참사회는 국무대신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다시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으로 된다는 것. (3) 특히 지정된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의 공공도서관 사업등에 관한 업무가 국무대신에 이관될 것을 명령으로 정할 수 있다. 3) 기타의 경우도 명령으로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의 공공도서관 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무대신에 이관할 것을 규정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명령제정권한이 의회의 양원중 1원의 결의가 있을 때 폐지될 수 있는 제정법적 규칙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행정집행기관의 업무가 국무대신에게 이관되었을 경우 국무대신은 언제든지 명령에 의해 당해기관에 그 업무를 반환할 수가 있다. 또 당해 명령으로 반환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충을 규정할 수 있다.

- ⑤ 1933년의 공중위생법(Public Health Act)제324조의 규정(동법상의 직무태만이 있던 단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담한 경비에 관한 규정)은 동조에서 지적하는 대신

(minister)을 국무대신과 또 관계 지방행정기관에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이 포함되는 것과 각각 검토한 연후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의 사무를 수행할 때 국무대신이 부담한 비용에 관해 적용한다.

제11조 (직원의 신분 자산 및 이양에 관한 보충규정) 생략

제12조 (박물관 미술관의 설치 관리)

- ① 관계 지방행정기관은 잉글랜드 또는 웨일즈에 있어서의 그 행정구역내 또는 그 구역 외에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가 있다. 또 그 설치 또는 관리를 위 하거나 또는 그에 관련하여 필요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단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이 아닌 본조의 규정에 의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관리를 아직 행하지 않고 있는 관계 지방행정기관은 국무대신의 승인이 없이 본조의 소정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치할 수 없다. 국무대신은 그 승인을 부여할 때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며 또는 언제라도 그 조건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② 본조 규정에 따라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관리할 관계 지방행정기관이 이들의 시설 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 타관계 지방행정기관과 박물관 또는 미술관 및 그의 모집품 의 이관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다.

제13조 (박물관 미술관의 입장료)

- ① 관계지방행정기관은 본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관계 지방행정기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하여 본조에 따른 권한의 행사여부 또는 여하한 방법으로 행사하는가를 결정할 때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당해 지구의 교육진흥에 충분한 역할을 이행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아동·생도의 이익에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박물관 미술관의 비용분담)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이거나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 지방행정기관이 가) 잉글랜드 또는 웨일즈내의 장소에 있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하여 나) 혹은 이들 장소에 있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위한 조언 기타의 봉사 또는 경제적 원조의 제공에 관하여 개인이 부담한 비용을 분담 할 수 있다.

제15조 (전시품 구입을 위한 기금설립의 권한)

- ① 상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관리하는 관계 지방행정기관은 해당기관의 관리기간중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비치할 전시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전조의 기금설립의 경우 동종의 기금이 있을 때 주택자치대신이 그 연합을 명할 수 있는 규정) 생략
- ③ (부칙규정과 본조에 있는 기금관리에 대한 적용에 관한 규정) 생략
- ④ 본조는 교구(Parish)의 참사회 또는 농촌지구의 시(borough)의 참사회에 대하여는 적용 않는다.

제16조 (검사)

국무대신은 본법에 의해 지방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연차보고)

국무대신은 본법에 의한 사무를 위해 필요로 하는 토지를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인 관계 지방행정기관에 의한 통제적 매상을 허가할 수 있다. 1964년의 토지소득(인가절차)법 (Acquisition of Land Authorization Procedure Act)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법시행 직전에 본법이 이미 시행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토지의 강제취득)

① 국무대신은 본법에 의한 업무상 필요한 토지를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인 관계 지방행정기관이 강제매입함을 승인할 수 있다. 1964년의 토지소득 (인가수속법) (Acquisition of Land Authorization Procedure)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법시행 직전에 본법이 이미 시행되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 (규칙)

① 관계 지방행정기관은 본법에 따라 동기관의 설치하는 시설의 이용 및 당해 시설의 구내에 있어서의 개인행동을 취체할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동규칙 인가는 국무대신이 이를 부여한다.

② 1933년의 자방자치법 제251조의 규정(규칙으로 별금을 과할 수 있는 결정을 규정)에 불구하고 본조에 따라 제정한 규칙에는 관계지방행정기관의 직원은 규칙에 위반한 자를 해당 기관이 본법에 의해 관리하는 건물내에 입관치 않거나 또는 건물내로부터 퇴거할 것을 인정하는 규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③ 1933년의 지방자치법 제250조 제7항의 규정(인가받은 규칙을 공중에 대하여 주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 관계 지방행정기관은 본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시행한 규칙의 복사를 당해 기관이 본법 의거 관리 및 공중의 입장이 인정되는 건물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교육적 또는 문화적 개최를 위한 건물의 이용)

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물을 관리하는 관계 자방행정기관은 침회 전시회의 개최, 필립 및 스라이드의 상영 음악연주 및 기타 교육적 또는 문화적 성질의 행사 개최를 위해 사용하며 또는 (수수료를 징수 또는 징수치 않고) 사용에 공할 수 있다.

제21조 (도 참사회의 경비)

① 도 참사회가 본법에 의해 공공도서관사업에 관해 지출한 경비는 당참사회의 도서관 구역에 속하지 않는 시 또는 면에서 이것을 징수할 수 없다. 본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해 혹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에 관해 도 참사회가 지출한 경비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관리하는 관계 지방행정기관의 행정구역내에서 해당행정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것을 징수한다.

②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관계 지방행정기관에 부여한 조건에는 당해기관

이 전항에 규정한 동의를 부여해야 할 요청을 첨가할 수 있다.

③ (도 참사회가 제5조에 규정한 합동위원회에 가입하였을 경우에 관한 특례) 생략

제22조 (국무대신의 경비지출 등)

본법을 위해 국무대신이 지출한 경비 및 본법에 기인한 지출증액을 의회가 승인한 지출금중에서 잉글랜드 및 웨尔斯 또는 스코트랜드의 지방자치에 관한 제정법에 따라 지방 세수 부족보상 보조금(Rate Deficiency Grant)의 형식으로 인정한 지출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제23조 (지역적 법률과의 관계)

본법의 제규정은 지역적인 법율(local act)에 별도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 구애치 않고 그 효력을 갖는다. 본법 시행 시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은 지역적 법률에 의해 부여한 권한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본법 시행 이후 본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단 전술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이 어떠한 의미로도 지역적 법율의 규정효력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제24조 (시실리제도(Scilly)에 대한 본법 적용절차) 생략

제25조 (용어정의)

본법의 「도서관지역」의 용어는 제4조 제2항에 정한 의미를 갖는다.

「도서관 재산 및 의무」는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공공도서관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유하는 재산 및 당해업무를 행사하기 위해 취득 또는 부담한 권리 및 의무를 의미한다.

「도서관행정 집행기관」은 본법에 따라 도서관행정 집행기관 또는 본법 시행 이전의 시기에 관해서는 1892년 내지 1919년의 공공도서관에 따른 동기관을 의미한다.

「도서관직원」은 관계 지방행정기관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공공도서관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동기관 소속의 직원을 의미한다.

「관계 지방행정기관」은 도 특별시「런던」·바로(borough) 도내의 시읍면(County district) 또는 교구의 참사회 런던시의 합동참사회 농촌지대에 포함된 바로의 참사회 혹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원회를 의미한다.

「직원」은 고용인을 포함한다.

「인구」는 「주민등록국 장관」(Register General)이 「잉글랜드」 및 「웨尔斯」의 최근의 국세조사(Estimate)로 추정한 인구를 의미한다.

제24조 (약칭 현행법의 개폐, 시행기일 시행지역)

① 본법은 1964년의 공공도서관법으로서 인용할 수 있다.

② (부칙에 표시한 현행법의 규정이 실효하는 취지규정) 생략.

③ 및 ④(본법 시행에 수반하는 현행 관계법의 규정에 대한 자구수정) 생략.

⑤ 본법 시행 직전에 1891년의 박물관 및 체육관법(Museums and Gymnasiums Act 1891) 제7조 또는 1901년의 공공도서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규칙(Bylaws)은 이들 법률의 폐지에 의해 실효 않고 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고 또한 국무대신이 승인받은 것과 같이 간주하고 그 효력이 지속한다.

- ⑥ (본법에 의해 도서관행정기관으로 존치 않는 교구 참사회에 대한 본법 제6조 제6호 가) 및 나)의 적용에 관한 특례) 생략.
- ⑦ 본법은 196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⑧ 본법의 규정은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에 대해 적용 않는다.

Always at the fore Springer

More than ...

- 360 series and encyclopedias
- 70 new series since 1982
- 700 new volumes in 1984/85

ALL ORDERS for the titles published by Springer-Verlag must be ordered through KUMI TRADING CO. which acts as the exclusive Distributor in Korea. If you have any further inquiries, please contact with KUMI TRADING CO. 크미무역 주식회사

Medicine
Psychology
Biology
Environmental Sciences
Chemistry
Physics
Astrophysics
Earth Sciences
Mathematics
Computer Science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Law
Economics
History
Philosophy

